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46 발의연월일 : 2022. 5. 18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성원·김승수

김형동 • 박덕흠 • 성일종

정우택・추경호・홍문표

홍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·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조). 법률 제 호
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수립·시행된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	제8조(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
수립ㆍ시행 등) ① (생 략)	수립ㆍ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
	음)
<u> <신 설></u>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
	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
	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
	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
	이를 종합하여 제6조제3항에
	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
	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
	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한다.